

석사학위논문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문 영 배**

2004년 12월

석사학위논문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도교수 이 상 봉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문 영 배

2004년 12월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指導教授 이 상 봉

문 영 배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문영배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인준함

委員 張 \_\_\_\_\_ (인)

委員 \_\_\_\_\_ (인)

委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년 12월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3
<b>제 2 장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 배경</b> .....	5
제 1 절 조세회피의 본질 및 유형 .....	5
1. 조세회피의 본질 .....	5
2. 조세회피 유형 .....	6
3. 조세회피의 문제점 .....	9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	11
1. 이론적 연구 .....	12
2. 실증적 연구 .....	16
3. 선행연구의 요약 .....	37
<b>제 3 장 연구의 방법 및 가설의 설정</b> .....	42
제 1 절 연구방법 .....	42
1. 조세회피요인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	42
제 2 절 가설의 설정 .....	45
1. 조세윤리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	45
2. 심리적 부담감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	45
3. 경영수지와 조세회피성향 .....	46
4.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과 조세회피성향 .....	47
5. 소득수준과 조세회피성향 .....	47

6. 부가가치세 납세자 집단과 면세사업자 집단의 조세회피성향	.....47
제 3 절 표본의 선정과 설문조사	.....48
1. 표본의 선정	.....49
2. 설문지 설계 및 자료처리 방법	.....49
<b>제 4 장 연구 결과 및 해석</b>	.....51
제 1 절 자료의 분석	.....51
1. 집단별 기술통계	.....51
2.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53
3. 상관관계분석	.....60
4. 다중회기분석	.....61
제 2 절 가설검증	.....65
1. 조세윤리와 조세회피성향	.....65
2. 심리적 부담감과 조세회피성향	.....66
3. 경영수지와 조세회피성향	.....66
4.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과 조세회피성향	.....67
5. 소득수준과 조세회피성향	.....67
6. 부가가치세 납세자집단과 면세사업자집단의 조세회피성향	.....68
<b>제 5 장 결론</b>	.....71
참고문헌	.....74
ABSTRACT	.....78
<부록 : 설문지>	.....80

## <표 목 차>

<표2-1> 이론적 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요인 .....	16
<표2-2> 설문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요인 .....	26
<표2-3> 실험적 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요인 .....	32
<표2-4> 실제자료에 사용된 조세회피요인 .....	37
<표3-1> 설문지의 구성 .....	50
<표4-1> 설문지 배포와 회수현황 .....	51
<표4-2> 설문의 사업자 유형분포 .....	52
<표4-3> 응답자의 신고소득수준 .....	52
<표4-4>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 .....	53
<표4-5> 응답자의 업종종사기간 분포 .....	53
<표4-6> 조세회피설문항목의 선택 .....	55
<표4-7> 조세윤리에 대한 반응 .....	56
<표4-8> 조세윤리 설문항목의 선택 .....	57
<표4-9> 심리적 부담감 설문항목의 선택 .....	58
<표4-10> 경영수지 설문항목의 선택 .....	58
<표4-11> 과세자료 은폐 설문항목의 선택 .....	59
<표4-12> 소득수준 설문항목의 선택 .....	60
<표4-13> 신뢰도 검정의 요약 .....	60
<표4-14> 상관관계 분석 .....	61
<표4-15> 다중회귀모형 요약 .....	62
<표4-16> 다중회귀분산분석 .....	62
<표4-17> 다중회귀 계수 .....	63
<표4-18> 단계선택법 .....	64

<표4-19> 단계선택법 모형 요약 .....	64
<표4-20> 단계선택법 계수 .....	65
<표4-21> 일원배치분산분석 .....	68
<표4-22>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사후 검정 .....	69



# 제 1 장 서 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조달 할 목적으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sup>1)</sup> 이러한 조세는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개별보상 없이 개인과 기업의 손에서 국가의 손으로 강제 이전되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갖고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은 과거 식민지 시대의 피해의식과 조세저항의식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경험 때문인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라는 의식보다는 남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바치는 또는 약탈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부정적인 의식구조, 세금을 내고 남는 것이 없다는 일반화된 인식, 급격한 경제발전의 의식구조의 개선이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윤리관의 왜곡 등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갖게 한다고 지적되어져왔다.

조세회피는 원활한 재정수입의 확보 및 세금부과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저해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의 문제점을 가져다준다.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를 팽창시켜 국가재정수입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으로 재정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혼란을 초래케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실태나 규모 등의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실증적·이론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

---

1) 임승현 조세법(박영사, 2003),

한 것은 조세회피요인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 자체가 복잡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고 여러 학문영역과 연관되어져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종교 등의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통해서만이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은 한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는 조세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역적, 업종별, 규모별, 사업자별로 세분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일반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세윤리,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 용의성 및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이 납세자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수구성비율(2002년 세수실적기준:32.71%)상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추정액에서도 가장 많은 세목이다. 또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기간에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원리 하에서는 가장 공평한 과세대상이다.<sup>2)</sup> 그러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이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평성이 떨어지는 과세대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연구대상 세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영업자중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세사업자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등에 의해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 용역등에 한하여 면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들은 선행과세인 부가가치세 신고근

---

2) 이종환 부가가치세 납세자 유형에 따른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회계연구, 2000년 제1호)

거 없이 자영업자 스스로 자기계산하에 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수준 또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기 쉽고 타 납세자와의 공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진다.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법인세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직접세이나 과세당국이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며 조세를 회피할 경우 적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악영향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개인기업보다는 조세회피에 대한 동기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조세회피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조세회피원인이 될 수 있는 조세윤리,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그리고 소득수준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고

셋째, 부가세납세자 유형 집단과 면세사업자집단이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므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수립이나 조세행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있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론적 연구방법은 조세회피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경제적요인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인의 수에 제약이 존재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실증적 연구방법에서는 실제자료 분석과 실험연구 및 설문조사 연구의 3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왔다. 여기서 실제자료 분석은 과세당국의 체

계화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외적 타당성은 높지만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료입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변수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실험연구는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연구의 내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외적타당성이 문제시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연구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고 표본추출 과정이나 응답의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논문은 실증적 연구방법 중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방법으로서 먼저 조세회피 요인과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조세회피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주지역의 개인기업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세회피 요인을 식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분류된 조세회피 요인과 납세자 특성 변수들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 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문제제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조세회피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연구의 설계 및 가설의 설정과 표본의 선정, 그리고 설문문항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요인 및 신뢰성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 제 2 장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조세회피의 본질 및 유형

#### 1. 조세회피의 본질

미국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조세성실성을 “국세청의 개입 없이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sup>3)</sup> 조세성실성비율은 신고 납부된 세금총액을 감사에 의해 수정되어 납부할 세금총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비성실성의 비율을 1에서 조세성실성의 비율을 차감한 것(1-조세성실성비율)으로 계산되는데 조세성실성의 반대개념으로 절세, 탈세, 조세회피 등이 있다.

절세(tax saving)는 「조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sup>4)</sup> 정의에서 보듯이 절세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모든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것을 뜻하며 가산세 부가와 같은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절세행위에 관한 위 정의를 볼 때 조세회피 행위와 구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실무상에도 그 구별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탈세(조세포탈 Tax evasion)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는 행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하여는 탈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와 형사벌<sup>5)</sup>인 자유형(징역) 또는 재산형인 벌금을 가하는 점에 있다.

3) Jackson, B. R. and V. 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1986),pp125-165

4) 최명근 세법학 총론, 세경사 1997, pp131-132, 『한국조세연구포럼 2001. 8. 세경사.』

5) 조세법 처벌법 제9조 등.

조세회피는 그 수단이 범형식의 남용에 그치고 그 선택된 범형식이 사법상으로는 적법·유효한 행위이며 세법상 조세회피의 경우는 회피세액의 추징과 행정벌적 성격의 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뿐이고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절세행위와 조세포탈행위의 중간위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의는 각 국의 학자들간에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으나 일본의 金子 교수와 新井 교수는 “민법·상법 등 법률상의 범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또는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한 범형식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의 감소를 기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관련 기업간의 거래에 발생하는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당갯가의 부인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조세회피의 유형

조세회피유형은 상당히 많아서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 및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조세회피 행위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적인 조세회피(intentional noncompliance)이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방법<sup>6)</sup>과 회계학적 관점에서 본 조세회피 유형<sup>7)</sup>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6) 황원오,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유형과 대책” 『한국국제재정협회 조세학술논집 제4집』, 조세통람사, 1987.

7) 국세청, 『세무조사실무』, (국세청 1994), 11-44면.

## 1) 일반적인 조세회피 유형

### (1) 세무자료나 세무정보의 미제출

대체로 신고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필요한 세무정보를 세무당국에 성실하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고의이든 과실이든 간에 이의 미제출은 보통 조세회피로 추정된다. 세무자료 미제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세무신고서의 미제출과 과세대상 자산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모든 국가가 확일적으로 세무신고서의 미제출을 조세회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회피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쉬운 조세회피행위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 (2) 소득항목의 허위신고

납세자가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득항목을 허위 보고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증여세나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매출로 위장 분류하여 신고하는 행위, 수수료·이자·사용료 등을 배당지급으로 허위 분류하여 신고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3) 회계처리의 조작

회계장부 처리를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수법은 매우 보편적인 조세회피 방법으로 그 수법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이중장부 또는 이중재무제표의 작성, 매입가액은 과대하게 매출가액은 과소하게 계상하는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의 공급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공비용 및 가공매입으로 비용공제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4) 재산(재화)의 은폐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소득을 은폐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조세 회피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권이나 그로부터 소득을 향유하면서 소득이나 그 자산의 법적 지배권을 면세자나 저소득자에게 형식상 이전하는 행위 그리고 현금, 귀금속, 무기명 증권, 골동품 등의 형태로 상속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5) 조세감면혜택의 남용

특정산업이나 특정국가에서 제공되는 조세감면혜택을 남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자회사나 지점이 소재하고 있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거주지의 자회사에서 남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간에 기술이전비 등을 과소 계상하여 본점이나 모회사의 과세소득은 감소시키고 반대로 지점이나 자회사의 감면소득은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6) 납세자의 해외도피

조세회피를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도 흔한 조세회피의 한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 2) 회계학적 관점에서 본 조세회피 유형

#### (1) 외형누락

- 무자료 매입에 의한 매출누락
- 생산량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 기술소득분(부산물 등) 매출누락

- 매출단가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 제품 품질의 등급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면적 및 임대료 조작에 의한 수입누락

## (2) 원가 및 경비 변태처리

- 가공원가의 계상
- 기타 경비의 변태처리

## (3) 자산 누락

- 재고자산 누락
- 가공자산의 계상
- 부당행위 계상

## (4) 가공부채의 계상

- 가공비용과 가공부채를 동시 계상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변제한 것으로 처리
- 차입금 및 가수금을 가공계상

## 3. 조세회피의 문제점

조세회피행위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재정을 어렵게 한다. 국가재정 수입의 주요 부분인 조세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으며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 미국의 경우 연방소득세 중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국세청의 과세자료 추적불능으로 인하여 1981년도에만 700~1,200억 달러의 주세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이 금액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며 나아가 세율을 인하할 수도 있는 방대한 것이라 한다.<sup>8)</sup>

둘째, 지하경제의 번창은 정부의 세무행정조직 및 세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즉 세정 및 세제의 상당한 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세제에 대한 신뢰성 감소와 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의 확대는 행정 및 세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크게 저하시킨다.

셋째,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켜 국민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소득분배 정책을 교란시킨다. 지하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차등을 초래하며, 차등적 조세부담은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에 위배되므로 사회구성원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지하경제의 성장은 정부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압박을 가한다. 세제에서 누락되는 지하경제는 지상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중한 부담은 더 많은 경제활동을 지하경제활동으로 전환시키며 또한 이를 확대시킨다.

지하경제 확대는 지상경제수준을 낮추고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높은 일반적 지출과 이전지출의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에 따른 지하경제의 확대는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다섯째, 조세회피에 따른 지하경제의 존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시킨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

8) Internal Revenue Service, Income Tax Compliance Research : Estimates for 1973-1981. Office of the Assistant Commissioner Research Division, July(1983).

요는 증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이 징수되어야 한다. 세금의 징수는 지상경제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지상경제활동에 대한 고율과세는 지상경제활동으로부터 지하경제활동으로 자원이동을 촉진하고,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사회의 전반적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고 경제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섯째, 조세회피 내지 지하경제의 확대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잘 살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사회전반에 불신풜조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사회적 불신풜조의 조장은 통계자료의 정확성 저하와 이로 인한 정부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경제정책은 정확한 자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지하경제의 확대는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각종 공식적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켜 정부의 효율적인 경제정책운용을 어렵게 한다. 예컨대 지하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간주함으로써 나타나는 높은 실업률지표에 근거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적 연구는 주로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제재적인 측면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실증적 연구는 이론적 연구에서 간과했던 납세자의 태도나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보고, 특히 실증적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조세회

피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이론적 연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학자들이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73년을 전후해서 M. G. Allingham과 A. Sandmo,<sup>9)</sup> T. N. Srinivasan,<sup>10)</sup> S. Yitzhaki<sup>11)</sup> 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이들은 세율, 적발확률, 벌금율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 1) Allingham 와 Sandmo의 연구

Allingham과 Sandmo(1972)는 납세자의 신고소득결정은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으로서 납세자는 기대효용  $E(u)$ 의 극대화를 위해 위험회피형(risk averter)이라고 가정하고 세율(tax rate), 적발확률(probability of detection), 벌금율(penalty rate)의 세 변수와 신고소득금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sup>12)</sup>

### 2) Srinivasan의 연구

Srinivasan(1973)은 Allingham-Sandmo 모형에서의 조세가 단일 비례세율이고 납세자는 완전히 비도덕적인 위험회피형이라는 전제와는 다른 가정을 통해 조세포탈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Srinivasan은 주관적인 소득세함수와 위험 중립적인 납세자라는 보다 현실적인 소득세에 대한 가정을

---

9) Allingham, M. G. and Sandmo,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1972), pp.323-338

10) Srinivasan, T. N. Tax Evasion :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1973), pp. 339-346

11) Yitzhaki, S.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1974), pp. 201-202

12) Allingham, M. G. & Sandmo, op. cit., pp. 328-338.

바탕으로 납세자의 행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적 위험회피가 소득의 감소함수로 표현되어지는 Allingham - Sandmo 모형과는 달리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은 그의 실제소득의 감소함수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Srinivasan이 Allingham - Sandmo와는 상이한 전제조건에서 모형을 설정하고 있으나 적발확률이 줄어짐에 따라 소득신고수준도 감소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양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이와 같은 Srinivasan의 납세자 행동에 대한 설명은 기대효용극대화가 아닌 기대소득극대화 즉 납세자의 목적이 세금과 가산세 납부 후의 기대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에 가정을 두고 누진세제하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소소득신고의 소득비율은 역시 증가하며 만일 적발확률이 소득의 증가함수이며 세율이 비례적이라면 과소신고소득의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3) S. Yitzhaki의 연구

Yitzhaki(1974)는 Allingham - Sandmo의 소득세 포탈의 이론적 분석이라는 1972년 논문을 보충 연구하였다. Allingham - Sandmo 모형에서는 납세자가 미신고소득(Undeclared income)에 대한 가산세율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세율이 상승할 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Yitzhaki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세법처럼 가산세(fine)가 조세포탈액에 부과된다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상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가 소득에 따라 감소하는 절대적 위험회피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세율의 증가가 조세포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대체효과는 없는 것이다.

Yitzhaki는 이 논문에서 Christiansen(1980)처럼 과소신고소득

(under-reporting income)에 대한 비례소득세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는 세율의 상승이 세금납부(tax liability)를 높이는데 이에 따라 과세당국으로부터 이탈되는 조세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Yitzhaki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4) V. Christiansen의 연구

Christiansen(1980)은 조세회피 억제수단으로서 적발확률이 낮지만 가산세를 무겁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가산세는 낮지만 높은 적발확률보다 더욱 강력한 조세회피억제책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Yitzhaki의 조세회피에 관한 논문을 토대로 적절히 수정·보완하였다. 즉 조세회피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X라는 납세 후 소득을 가지고 Y만큼 세금납부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의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X+Y)$ 가 된다. 이때 그의 조세회피가 적발되지 않을 확률(p)는 가처분소득(Y)과 독립적이며 조세회피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의 조세회피자는 감추어진 소득(hidden income)에 대해서는 보통 조세(ordinary tax)를 납부하고, 그리고 여기에 가산세율을 계산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납세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행동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Christiansen의 모형은 세율상승에 따라 조세이탈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관해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세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하지 않고 얻은 가처분소득 X가 납세 전 소득에 비해 줄어든다.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해서 얻은 소득 Y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납세자의 결정에 달렸다.

##### 5) R. Cross 와 G. K. Shaw의 연구

Cross와 Shaw(1981, 1982)<sup>13)</sup>는 탈세만을 분석하기 위해 Allingham과 Sandmo(1972)에 의하여 채택된 것과 유사한 틀(frame-work)을 사용하여 탈세·절세 의사결정 모델을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탈세와 절세는 대체적·보완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세율의 증가는 탈세자들이 절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기대효용 극대화 모델을 세워 적발확율, 벌금율, 세율 등을 절세와 탈세에 대비하여 절대적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탈세소득에 대한 세율의 변동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과 소득세가 누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율의 증가는 탈세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론적 연구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요인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

13) Cross, R. and G. K. Shaw, The Tax Evasion-Avoidance Choixe: A Suggested Approsch, National Tax Journal, Vol. 34(1981), pp. 489-491. Cross, R. and G. K. Shaw, The Economics of Tax Auersion, Public Finance, Vol. 37(1982), pp. 36-47

<표 2-1> 이론적 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요인<sup>14)</sup>

연구자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	직업	동료집단	조세윤리	공평성	복잡성	세무간섭	체재	적발확률	세율	기타요인
Allingham & Sandmo(1972)				-								+	+	+	
Srinivasan(1973)													+	±	
Yitzhaki(1974)														+	
Christiansen(1980)												+	+		
Cross & Shaw(1983)													+	0	

(주) (+) : 조세순응정도와 양(+)의 상관관계, (-) : 조세순응정도와 음(-)의 상관관계

(0) : 불확실함.

(±, +/0) :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남.

자료 : B.R. Jackson 무어 V.C Milliron, op. cit., pp. 127-130을 참조 보완.

## 2. 실증적 연구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납세자가 조세회피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는가, 그리고 그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 1) 설문조사 연구

설문조사 연구는 사회적 현상이나 관심있는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표본을 이용함으로써 신념, 여론, 태도, 동기 및 행위를 연구하고, 실제 소득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다. 설문조사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많은 고려요소를 하나의 연

14) 이론적 분석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요인을 살펴볼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성, 교육수준, 조세윤리, 공평성, 과세체도의 복잡성 및 과세당국의 간섭요인 등은 어느 연구에서도 볼 수 없다. 그것은 이론적 분석이 주로 경제적 요인을 이용하여 이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표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표2-2~4>와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론적 연구나 실험연구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표본의 선택에 편기가 발생하기 쉬우며 신뢰성 있는 응답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Vogel의 연구

Vogel(1974)<sup>15)</sup>은 스웨덴 국립중앙통계국에서 조세제도에 관해 실시했던 여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태도결정 요인을 검토했다. Vogel의 연구 결과, 자영소득자의 경우에 탈세의 기회가 평균적인 경우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이었고, 자영소득자를 제외한 소득자는 25.6%가 탈세 기회가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는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31.6%가 탈세 기회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 반면,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람은 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원천징수의 유무에 따라 조세포탈의 기회가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준거집단 중에 탈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36%)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탈세 기회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조세회피 행위가 준거집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Vogel의 연구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Spicer와 Lundstedt의 연구

Spicer와 Lundstedt(1976)<sup>16)</sup>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해서 미국 Ohio주에 거주하는 13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제재의

---

15) Vogel, J., op. cit., pp. 499-513

16) Spicer, M. W. and S. B. Lundstedt, Audit Probabilities and the Tax Evasion Deci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1976), pp. 241-245

정도와 행정능력, 재정불공정, 사회적 규범 등의 네 가지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불공정 지수 및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조세포탈자의 수가 조세포탈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확률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률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조세포탈 지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제재의 정도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률, 조세포탈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배경변수들 중 연령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세무조사 경험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금 및 연금소득비율은 조세저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과 조세저항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소득수준과 조세저항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Srinivasan의 이론적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런 상이한 결과에 대해 Spicer와 Lundstedt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계층의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3) Song과 Yabrough의 연구

송영달과 Yabrough(1978)<sup>17)</sup>는 North Carolina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윤리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조사했다. 이들의 연구결과 납세신고행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탈세사실의 적발확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신생활자나 전·월세 입주자에 비해 기혼자와 자가소유자들의 납세윤리가 대체적으로 높다. 또한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과 납세윤리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세를 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감과 무력감,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납세윤리의식이

---

17) Song, Y. D. and T. E. Ya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1978), pp. 442-452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 측면에서는 이들의 연구 결과와 Vogel의 연구결과가 상반된다.

#### (4) A. Lewis의 연구

Lewis(1979)<sup>18)</sup>는 1977년 영국 Bath지역에서 200명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지는 탈세와 절세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부가하여 납부세액, 조세체계의 기능, 누진과세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찬성하지 않았고, 탈세자들은 법에 의하여 가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탈세에 대한 응답은 분명치 못하였다. 고소득자들, 중간부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규모탈세는 가볍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Lewis(1979)는 조사를 통하여 소득과세에 대한 태도를 소득수준에 크게 의존하며 고소득자들은 소득과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못하였다. 그들은 탈세와 절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동조한다는 것이다.

#### (5) Ekstrand의 연구

Ekstrand(1980)<sup>19)</sup>는 South Bemb와 SanJose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탈세 경험이 있다고 시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연령층에 속했고 평균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중류 이상의 소득계층에 속하면서 부업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납세신고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탈세의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높은 소득계층에 속한 납세자들 중 다수가 실제로 탈세 행위

---

18)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34(1979), pp. 245-257

19) Ekstrand, L.,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Focus Group and Survey Results, 1980 Proceedings of the 73rd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National Tax Association, November(1980).

를 범하긴 해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Vogel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무관서와 접촉한 경험이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향이 짙다는 연구결과는 송영달과 Yabrough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Ekstrand는 이러한 현상이 불성실한 납세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보였던 납세 행동으로 인해 세무관서와 접촉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 (6) 이종환의 연구

이종환(1992)<sup>20</sup>은 납세자를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서 납세자 유형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조사했다. 종속변인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였고, 독립변인은 세율, 세율구조, 적발확률, 가산세율, 재정불공정성이었다. 그는 이러한 독립변인들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방향성과 상대적 크기를 밝히고,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이들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정했다. 연구결과, 모든 납세자에게서 세율과 조세회피행위가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누진세제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누진세 제도가 조세회피행위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확률과 조세회피 행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반과세자에게서 조세회피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 제도 역시 조세회피행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적발확률에 비해서는 낮았다.

#### (7) 김진황의 연구

김진황(1993)<sup>21</sup>은 우리나라의 상장중소기업(207개 업체)과 비상장기업

---

20)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1992). pp. 57-72

21) 김진황,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1993).

(122개 업체)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납세풍도, 납세의식, 과세공평성, 재정공평성, 조세부담율, 제재정도, 행정능력, 세제복잡성, 매출액, 직종 등의 변수를 가지고 조세회피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수준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기업풍토가 중소기업의 납세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정능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무당국의 조사 빈도나 세무조사의 엄격성 등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조세회피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8) 이우윤의 연구

이우윤(1996)<sup>22)</sup>은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서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을 연구하였다. 그는 독립변인을 조세특정요인(세법의 복잡성과 조세지식), 조세에 대한 신념과 인식(조세포탈로 인한 기대 혜택과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제재에 대한 인식, 상대적인 박탈감), 납세자의 인성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납세자의 직업분류(근로소득자와 자유소득자)와 탈세경험 유무라는 조절변수를 첨가했다. 종속변인은 조세포탈 성향 정도였다.

연구결과, 세제의 복잡성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유소득자의 납세행동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고, 탈세 경험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제의 복잡성과 조세포탈 성향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탈세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비해 탈세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비해 탈세 경험이 있는 납세자의 행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

22) 이우윤,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1996), pp. 114-159

다. 인성적인 요인 중 순응성과 조세포탈 성향은 양(+)<sup>23)</sup>의 상관관계가 있고, 책임성과 조세포탈 성향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탈로 인한 경제적 기대 혜택,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세포탈 성향간에는 양(+)<sup>23)</sup>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공정성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유소득자의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고, 탈세 유경험 납세자와 탈세 유경험 자유소득자의 행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자와 탈세 유경험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재와 조세포탈의 성향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조정환의 연구

조정환(1996)<sup>23)</sup>은 국내의 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경리 및 회계부서, 자금부 등의 과장급 이상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가능자료 82부를 사례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세공평성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양(+)<sup>23)</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세윤리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의 상황적 요인인 조세부담감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는 모두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양(+)<sup>23)</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공평성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가 납세윤리와 연관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 납세윤리가 조세회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납세윤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세회피의 방지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종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

23) 조정환,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1996), pp. 243-269

않았으며, 중소기업의 민감한 부분인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이므로 측정에 편향(bias)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편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며, 또한 측정대상이 설문지를 완전히 이해한 경우와 이해하지 못한 경우의 편향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10) 최임수의 연구

최임수(1997)의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세제도적인 요인과 다른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35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19개의 요인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환경요인이 새로운 변수로서 선정되었다.

회귀분석결과, 환경요인 중 조세심리적 요인 납세자 지식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은 조세윤리적 요인은 부(-)로 나타나 조세순응측면으로, 반면에 조세제도적 요인은 정(+)으로 조세회피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부양가족수요인과 직업요인은 조세회피측면으로, 반면에 장기종사 연수요인은 조세순응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납세자 개인의 윤리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조세제도,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었다.

#### (11) 박원일의 연구

박원일(2000)은 국내의 법인납세자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이미 알려진 조세회피요인과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여 실증적 연

구방법 중 실태조사와 실제소득 및 신고행태 자료에 의한 연구방법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과 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세윤리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부호는 부(-)로 나타났다. 심리적 부담감 역시 조세회피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부호는 정(+)이다. 경영수지는 회귀분석결과 이 변수가 조세회피성향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부호는 부(-)로 나타나 세금납부 수준의 결정이 다른 요인보다는 소득수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긍정하든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금납부수준이 경영수지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조세회피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세자료 노출에 의한 측정치는 성실, 불성실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회귀계수의 부호가 정(+)으로 나타나고, 회귀계수의 유의성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자료의 은폐, 비노출이 용이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높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소득수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변수는 조세회피성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부호도 정(+)으로 나타나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회피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행태에 관한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누락이나 비용의 가공 계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77%), 심지어 세무조사시에도 불성실한 대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4%)

## (12) 윤말순의 연구

윤말순(2001)의 연구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마련에 기여하고자 실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

로 조세회피성향(유형)을 조사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성별 조세회피요인 중요도 인식차이에 있어서 기업경영형태에 따라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행정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자산 규모에 따라 조세 심리적 요인과 조세회피기대요인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조세 행정적 요인이, 과세표준에 따라 제재 요인이, 세무조사경험에 따라 조세 부담적요인, 조세제도적요인, 제재요인이, 회계 실무담당자 경력에 따라 조세 지식적 요인, 사회 문화적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업종에 따라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 심리적요인, 조세 지식적요인, 조세 행정적요인 등이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끝으로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부담적 요인 및 조세 행정적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윤리적요인, 제재요인은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연구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요인을 정리하면 표<2-2>와 같다.

<표 2-2> 설문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요인

연구자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	직업	동료집단	조세윤리	공평성	복잡성	세무간섭	제재	적발확률	세율	기타요인
Vogel(1974)	+	+	-			-	+	0		-				0	정부신뢰도, 사회성향
Spicer(1974) Spicer & Lundstedt(1976)	0		0	0	0	0	+	+	+		-	0	0		정당관계
Song & Yarbrough(1978)	0	0	+	+		0	+		+		+		+		종교, 인종, 정당관계, 정부신뢰도
Lewis(1979)				-										0	
Ekstrand(1980)	-		+	+											세무관서와의 접촉빈도
이종환(1992)													+	-	재정불공정, 가산세율
김진황(1993)							-	+	+	-		+		-	재정불공정, 정부신뢰도, 조세부담
이우윤(1996)	-		0	+					+		-				조세지식, 순응성, 책임성, 경제혜택, 세제복잡성
조정환(1996)							-	+			-				조세부담
최임수(1997)			-					-							조세심리, 사회문화, 조세제도,
박원일(2000)				+				-				+			경영수지, 과세자료 노출
윤말순(2001)			-					+				-			조세제도, 조세심리, 사회문화, 조세부담

(주) (+) : 조세순응도와 양(+)의 상관관계, (-) : 조세순응도와 음(-)의 상관관계.

(0) : 불확실함.

자료 : B.R. Jackson and V.C. Milliron, op. cit., pp. 127-130을 참조 보완.

## 2) 실험적 연구

실험적 연구는 실험환경을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여 조세회피에 관한 납세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분

석방법이긴 하지만 피실험자의 납세자 대표성 등 실제현상을 실험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결과의 실무적용에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 분석방법이다. 실험연구에서 발견된 결론은 절대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어떠한 개념의 경향을 밝혀주는 것이다.

### (1) Schwaqrtz와 Orleans의 연구

Schwaqrtz와 Orleans(1967)는 미국 국세청(IRS)의 협조를 얻어 연방소득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동기유발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처벌의 위협과 양심에 대한 호소 중 어느 쪽이 납세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성실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는 효과를 더 많이 갖는가를 비교하였다.

센서스(census)자료를 근거로 서로 비슷한 납세자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각기 무작위적으로 배정하였다. 통제집단에 속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1962년도 소득세 신고개정일로부터 약 한달 전에 면접조사를 하였다. 연구팀은 실험집단에 속한 일부 납세자와의 대화에서 탈세행위자에 대해 정부가 가하는 제재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에 속한 나머지 다른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 1961년과 1962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전체의 조정총소득액(abjusted gross income)과 공제세액 및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제재의 위협과 양심에 대한 호소 모두가 자진신고납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만 양심에 대한 호소가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 (2) Friedland, Maital 그리고 Rutenberg의 연구

Friedland(1978) 등<sup>24)</sup>은 실험연구법을 이용해서 탈세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15명의 실험참가자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반복 실험을 했다. 이들은 세율변화와 그 외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탈세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과중한 가산세와 빈번한 세무조사가 탈세 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적발확률, 미신고소득, 신고소득이었다. 연구결과, 세율이 높아질수록 탈세를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다른 요인이 일정한 경우 남성과 젊은 기혼자들이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높은 연령층이나 독신생활자 및 여성은 탈세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빈번한 세무조사에 비해 무거운 과징금이 더 효과적인 탈세 방지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Spicer와 Becker의 연구

Spicer와 Becker(1980)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포탈과 재정 불공정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sup>25)</sup>. 이들의 실험에서 남자 21명 여자 36명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는데, 상대적인 세율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집단을 설정하고 그 사람들의 조세포탈행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가설은 재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조세포탈은 증가하고 재정불공정성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조세포탈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33%가 조세포탈을 하고,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25%, 그리고 세금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12%가 조세포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재정불공정성의 인식은 조세포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재정불공정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

---

24) Friedland, N., S. Maital and Retenberg,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August(1978), pp. 107-116.

25) Spicer, M. W. & L. 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 An Exp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33(1980), pp. 171-175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조세포탈액은 증가하지만, 재정 불공정성으로 인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조세포탈액은 감소할 것이라는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4) Kaplan과 Reckers의 연구

Kaplan과 Reckers(1985)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과 회피에 대한 적절한 벌금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요소들의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sup>26)</sup>

첫번째 연구에서는 평균나이 24세인 135명의 경영학과 재학생을 실험참가자로 하여 4가지 경우를 만들어 조세회피의 만연, 재무적 요구, 나이, 소득, 윤리, 회피율, 공정성 등을 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벌금과 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벌금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만연, 재무적 요구, 소득수준, 윤리, 회피율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세회피성향에는 윤리, 회피율만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번째 연구에서는 평균나이 33세인 138명의 경영학과 재학생을 실험참가자로 하여 4가지 경우를 만들어서 회피의 결과, 도덕적 특성, 나이, 소득, 윤리, 회피율, 공정성 등을 변수로 종속변수인 벌금, 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벌금부과에는 소득, 회피율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피성향에는 회피의 결과, 도덕적 특성, 나이, 윤리 회피율등의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5) Alm과 Jackson 및 Mckee의 연구

Alm과 Jackson 및 Mckee(1992a)는 정부사용상의 변화들뿐만 아니라 세금, 제재, 세무감사비율 변화들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들을 측정하기 위

---

26) Kaplan, S. E. & P. M. Reckders, A study of Tax Evasion Judgement, National Tax Journal 38(1985), pp. 97-102

해 통제된 조건에서 실험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sup>27)</sup> 피실험자는 각 5명씩 세그룹으로 구분하여 빙고( bing)게임의 방식으로 15개의 subject terminal과 monitor장치를 갖춘 실험실에서 컴퓨터에 의해 부여된 상황에 따라 게임에 임하게 하였다.

연구결과는 조세성실성은 소득과 세무감사율이 증가하고 세율이 감소하면 증가되며, 벌금율의 변화가 조세성실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날 때 세금납부에 의한 정부의 공공재 공급으로부터의 이익이 증대될 때 조세성실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 (6) 전태영의 연구

전태영(1990)<sup>28)</sup>은 실험연구 방법을 통해서 소득수준, 세율,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변수들이 조세회피성향,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 벌칙수준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설문지는 동일한 속성을 각기 다른 수준으로 8번 반복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는데 소득수준, 소득비율,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각각의 수준이 현저히 다르게 조합된 가상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변수로는 조세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세무조사 확률이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는데, 조세행정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여건에서는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을수록 오히려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 비율과 조세회피성향간에 양(+)<sup>29)</sup>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홍학표(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27) Alm, J., B. R. Jackson & M. McKee,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Data, National Tax Journal 45(1992), pp. 107-114

28) 전태영, 앞의 논문, 72-103

### (7) 유시영의 연구

유시영(1993)<sup>29)</sup>은 실험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소득세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잠재 납세자 집단과 사업자 집단으로 구분해서 비교 분석되었고, 종속변인은 조세회피태도, 독립변인은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 소득수준 등이었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의 조세회피 행동에는 상관이 없었고, 세율과 조세회피 행동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적발확률을 높이면 조세회피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산세율을 증가시키면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은 감소했고, 조세회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가산세율에 비해 적발확률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실험적 연구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요인을 정리하면 <표2-3>과 같다.



---

29) 유시영,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교(1992), pp.77-97

<표 2-3> 실험적 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요인

연구자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	직업	동료집단	조세윤리	공평성	복잡성	세무간섭	제재	적발관리	세율	기타요인
Schwartz & Orleans(1967)			+			+		+				+			종교
Friedland, Maital & Rutenburg(1978)	+	-	+	-								0	0	-	적발확률에 상대적인 제재강도
Spicer & Becker(1980)	0	+		0				+						-	
Kaplan & Reckers(1985)	+			0				+	0						탈세의 확산정도, 재무적 빈곤, 사회적 영향, 탈세자들의 윤리
Alm & Jackson & McKee(1992)				+								+	0	+	
전태영(1990)	0			-					+		+	+			정부신뢰도, 벌과금
유시영(1993)	0	±		0			-	+	+				+	-	가산세율, 재정불공정

(주) (+) : 조세순응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 (-) : 조세순응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

(0) : 불확실함.

자료 : B.R. Jackson and V.C. Milliron, op. cit., pp. 127-130을 참조 보완.

### 3) 실제자료의 연구

이 방법은 납세자가 제출한 보고 자료나 납세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주로 회귀모형(regression modeling)을 설정하였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K. A. Mork의 연구

Mork(1975)는 1970년대에 노르웨이인 3,4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들이 실제로 큰 규모의 조세포탈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각 응답자들이 밝힌 소득을 연금소득과 평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결과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신고소득의 비율은 감소하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신고소득의 비율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Mork의 경험적 분석은 Allingham-Ssndmo 모형에서 상대적 위험회피가 소득의 감소함수라고 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Moik의 결론은 Srinivasan의 이론적 분석과는 일치하지만 Spicer와 Lundstedt의 설문조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 (2) C. Clotefelter의 연구

Clotefelter(1983)<sup>30)</sup>는 실제 개인들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소득세신고와 한계세율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자료는 1969년 국세청의 납세자 성실납세제도 측정 프로그램(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me : TCMP)조사자료이고, 약 47,000명의 개인들에 대한 조세신고서를 포함한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 소득의 원천, 적발확률 등의 설명변수와 결혼여부, 연령, 거주지역 등의 더미(dummy)변수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한계세율과 세후 소득이 조세회피와 통계적으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부차적인 결과로 임금, 이자, 배당이  
소득에 비하여 보다 큰 비율을 구성하는 경우 과소신고는 대체로 낮음을  
알았다. 납세행위와 관련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  
용 받는 납세자는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비하여 소득을 과  
소신고한다는 것이다.

---

30) Clotefelter, C. T.,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la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5, Aug(1983), pp. 363-373

### (3) A. D. Witte와 D. F. Woodbury의 연구

Witte와 Woodbury(1983, 1985)<sup>31)</sup>는 성실납세(tax compliance)에 대한 제재변수들의 영향에 대하여 검정하였다. 그들은 1970년대에 국세청에 제출된 1969사업 년도 조세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진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척도이고 1969년 TCMP와 관련된 납세자들에 대한 층화무작위표본(stratified random sample)의 일련의 조사에 따라 계산되었다. 그것은 조세과소납부와 과대납부의 절대값이 납부된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측정된다.

Witte와 Wodbury(1983, 1985)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세무조사 확률은 낮은 소득의 비영업납세자를 제외하고 높은 성실납세 이행율과 관련되었고, 둘째, 형사상의 사기(criminal fraud)에 대한 금고선고의 엄격성은 일반적으로 성실납세이행을 증가시켰으며, 셋째, 적발의 염려(fear of detection)는 성실납세 이행을 증가시켰다. 넷째, 소득효과는 복잡적이고, 성실납세 이행율은 소득에 따라 매년 약 \$30,000의 소득까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섯째,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들은 비노동소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들보다 조세규제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업자들의 동의가 적었다.

### (4) J. Slemrod의 연구

Slemrod(1985)<sup>32)</sup>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1977년 납세자신고서의 층화무작위표본(stratified random sampling)과 23,111명의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개인은 한계세율, 수정총소득, 연령, 배우자유무, 소득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 더미(dummy)변수들에 대한 탈세지수의 회귀분석결

---

31) Witte, A. D. and D. F. Woodbury, op. cit., pp. 1-13

32) Spemrod, J., An Empirical Test for Tax Evas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VII(1985), pp. 232-238

과를 보고하였다.

이 분석은 이제까지 보고된 것 중 가장 나쁜 회귀분석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단일의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며, 결정계수( $R^2$ )는 약 0.8%에 불과하였다. 그는 한계세율과 탈세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Clotefelter(1983)의 분석결과는 확증될 수 없다고 결론을 맺는다.

#### (5) Alm과 Beck의 연구

Alm과 Beck(1993)은 Colorado주의 조세사면(tax amnesties)<sup>33</sup>과 성실성(compliance)과의 관계를 단순시간추세분석(simple time trend analysis), ARIMA분석(autoregression integrated analysis) 등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방법으로 연구하였다.<sup>34</sup>

분석결과, 첫째, 단순시간추세 분석결과는 사면 전후의 두 기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F$ -statistic=0.08) 세수에도 변화가 없었고, 또한 세수추세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ARIMA 결과는 조세 사면 전후의 기간에 있어서 증가된 조세수입 추세가 같으므로, 1985년 조세사면후의 조세성실도는 그 전 기간에 비하여 변화하지 않았다. 셋째, MARIMA의 결과는 조정변수들에 대한  $t$  통계량이 1.11을 넘지 못했고 따라서 조세사면제도는 사면후의 조세성실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Colorado주의 조세사면제도는 일시거액의 세입증대 효과도 없고, 납세자 전체에 대한 성실도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6) Young의 연구

Young(1994)은 Michigan주의 개인소득세의 사면 참가자들로부터 수집

33) 조세사면제도는 체납자들에게 단 한번의 납부기회를 부여하면서 처벌을 하지 않게 하는 제도로서 1981년 이후 미국 34개 주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배해 있고, 조세수입증대 및 정책측면 등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진행되어지지 못했다.

34) Alm, J. & W. Beck, Tax Amnesties and Compliance in the Long Run : A Time Series Analysis, National Tax Journal 46(1993), pp. 53-60

된 자료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특성요인들과 성실성(compliance)과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방법으로 연구하였다.<sup>35)</sup> 분석자료는 1985년, 1986년 개인소득세에 관한 사면데이터베이스(Michigan Amnesty Data Base : DADB)에 수록된 수정신고자 588건(19.6%)과 무신고자 2,398건(80.4%)을 소득계층별(AGI)로 7계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를 실제신고행동에서 파생된 성실도의 직접적인 척도로 하고, 독립변수로서 소득수준, 성별, 세금 신고서 준비방식, 제출상태, 지리적 위치, 직업, 탈세기회(직업, 소득수준, 소득원천), 사면이전의 감독기관의 접촉, 세율, 면세, 사면후 탈세로의 복귀, 자영업 등 12가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면이전에 감독기관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성실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기회가 있었던 사면참가자들이 탈세기회가 없었던 참가자들보다 회피정도가 컸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판매업이나 자영업자의 회피가 많았고, 사면에 참가한 자는 그 이후에 성실성이 더 낮아졌다. 그리고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한 납세자보다 전문가가 준비한 신고서에서 회피가 많았고, 지리적 위치에서는 Witte와 Woodbury(1985)의 연구와 상충되는 점도 있으나(빈곤층이 적고, 높은 고용율을 나타내는 중류층 백인 거주지역이 성실성이 높다는 연구) 학생수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성실성이 낮았다. 세율이 높을수록 성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보다 회피경향이 크고,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회피가 컸다고 결론지었다.

지금까지 실제자료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요인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

35) Young, J. C., Factors Associated with Noncompliance : Evidence from the Michigan Tax Amnesty Progra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6, No. 2(1994), pp. 82-105

<표 2-4> 실제자료에 사용된 조세회피요인<sup>36)</sup>

연구자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	직업	동료집단	조세윤리	공평성	복잡성	세무간섭	제재	적발확률	세율	기타요인
Mork(1975)				-	+										
Clotfelter(1983)	±			-	+					-					-
Witte & Woodbury(1985)	+		+	-	+	+					+	+	+		
Slemrod(1985)	+			-											결혼
Alm & Beck(1993)														-	조세사면제도, 성실도
Young(1994)		+		+		+					+			-	결혼, 직업, 탈세기회의

(주) (+) : 조세순응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 (-) : 조세순응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

(0) : 불확실함.

(±) :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남

자료 : B.R. Jackson and V.C. Milliron, op. cit., pp. 127-130을 참조 보람.

### 3. 선행연구의 요약

#### 1) 이론적 연구의 요약

이상에서 이론적 연구 및 실증적 연구들을 국내외 연구자별로 고찰해 보았다. 이론적 분석모형은 납세자가 기대효용함수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즉,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분석모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납세자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소득액 전부

36) 회귀모형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요인을 살펴볼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동료집단, 조세윤리 및 공평성요인 등은 어느 연구에서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실제자료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남녀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으며, 특히 나머지 4개의 요인은 윤리적 또는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동 접근법에서는 이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표에 포함시킨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표 2-1~3>과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를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될 주관적인 확률 및 그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부과될 처벌에 입각해서 조세회피 의사결정을 내린다. 셋째, 납세자는 납세신고와 관련되는 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납세자는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와 자신의 효용수준을 고려해서 조세회피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표 2-1>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이론적 연구방법에는 주로 세율이나 제재와 같은 조세 제도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자에 따라 연구변인과 연구결과가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누진세 제도하에서는 세율을 높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지만 세무조사 횟수나 가산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이론적 분석 모형들은 세율이나 처벌구조가 조세회피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납세자의 행동 면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분석모형에서는 조세회피 행위를 적발확률이나 처벌확률과 같은 객관적인 확률로 분석했다. 그러나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결정짓는 데는 납세자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확률도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접근법은 납세자의 행동이 순전히 경제적 동기에서만 지배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규범 등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러한 점에서 납세자의 탈윤리성과 효용극대화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는 이론적 분석모형은 제한적인 타당성을 가질 뿐이며, 수학적 모형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은 부여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2) 실증적 연구의 요약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조세회피 의사결정모형이 도박게임의 모형과 같다는 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납세자들은 효용극대화나 소득극대화 전략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납세자는 조세회피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효용극대화나 소득극대화 개념보다는 확률(Heuristics)이나 경험법칙에 의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보가 무엇이고 그 정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려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sup>37)</sup>

<표 2-2, 2-3, 2-4>에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결과 즉, 설문조사 연구, 실험적 연구, 실제자료의 연구에 의한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요성은 연구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있고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연령과 납세율, 과세 공평성에 대한 인식, 세율 등의 요인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다. 조세회피성향에 있어서는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는 증가하지만 과세가 공평하다고 생각할 경우, 납세율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행위를 하지 않으며 동료집단의 납세풍도에 있어서는 동료집단에 조세회피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는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표본의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회계 및 종교 등 많은 요인을 고려한 학제간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

---

37) Kahneman, D., P. Slovic and A. Tversky, Judgement Under Uncertainty :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1982).

다.

지금까지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살펴본 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이 있었다.

첫째, 납세자의 행동은 복잡·미묘하며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납세자는 조세회피로 인한 화폐적 이득이나 손실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하며, 경제학적 요인에 대해서 받는 것보다 영향이 크다.

셋째, 납세자의 적발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납세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조세회피기회는 납세자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납세자의 조세윤리는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 3) 선행연구에 의한 조세회피 요인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상에서 이론적 연구결과와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하고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한 보고서<sup>38)</sup>는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를 9개, B. R. Jackson과 V. C. Milliron<sup>39)</sup>은 15개로 분류하는 반면, 미국 국세청<sup>40)</sup>은 무려 64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세회피 의사결정 요소는 하나의 시각에서 평면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들이 몇 가지의 요소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더욱 세분하여 몇 개의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자영업납세자(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등)를 대상으로 하여 조세회피성향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세윤리, 심리적

38) AICPA, op. cit.

39) Jackson, B. R. and V. C. Milliron, op. cit.

40) Internal Revenue Service, A Dictionary of Compliance Factor, Office of the Assistant Commissioner Research Division(1978).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 용의성 및 소득수준을 조세회피요인으로 하였다.



## 제 3 장 연구의 방법 및 가설의 설정

### 제 1 절 연구방법

#### 1. 조세회피요인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연구자가 의도하고 있는 많은 요인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들 요인을 축소하거나 분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인분석이 이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에서 분류되거나 확인된 요인들로 납세자의 납세윤리의식,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 1) 변수의 선정과 정의

##### (1) 종속변수의 선정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유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조세회피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제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설문지 조사에 의한 간접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를 질문하기 보다는 어떤 상황 하에서 응답자의 기본적 성향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한다면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Song과 Yabrough(1978), Vogel(1974)등은 조세윤리를, 실제자료를 분석한 Young(1994)은 납세자의 신고소득을, 그리고 김진황과 조정환, 박원일은 조세회피성향을, 유시영은 조세회피태도 및 조세회

피의지, 이우윤은 납세자의 포탈성향등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조세회피요인별, 납세자 특성별 조세회피성향을 검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조세회피성향으로 선정하였다.

## (2) 독립변수의 선정

조세회피에 관련되는 변수는 다양하고 조세회피성향 연구들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율, 소득수준등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연구한 Allingham과 Sandmo(1972)의 연구 등 접근방법이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경제학적 분석방법의 한계를 벗어나 수많은 실증적 연구가 탄생하였다. 최근 국내연구에서도 박원일(2000), 윤말순(2001)등은 납세풍토 정부신뢰도, 심리적 부담등 경제학자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심리학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자영업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가운데 심리학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등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율, 납세풍토, 정부의 신뢰도등도 중요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세윤리, 심리적부담감,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경영수지,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표본대상 사업자유형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1개를 추가로 조사 분석 하였다.

### (3)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성향이란 자영업자의 조세회피성향을 의미한다.

실제적인 조세회피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어떤 상황 하에서 응답자의 기본적 성향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하는 간접방법을 이용한다.

조세윤리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납세자의 행동에 대한 규범으로 기업주가 느끼는 사회의 전반적인 조세윤리에 대한 인식과 기업주가 지니는 도덕기준 또는 가치관을 나타낸다.

심리적 부담감은 정부가 납세자의 직접적인 조세회피 행위의 적발과 적발된 납세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과 세무조사를 받아서 적발될 확률 및 적발되었을 때의 벌금 수준으로 정의한다.

경영수지는 한 회계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다. 즉 납세자들이 소득 신고시 전년도 대비 소득이 증감에 따라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은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과세자료 은폐의 가능성이다. 즉 유통구조의 전근대성과 무자료거래, 업종의 난립으로 인한 변칙거래, 영세한 도·소매업체에서의 박리다매 형태로 인한 세금계산서 탈루와 카드결제 기피등을 말한다.

소득수준은 사회경제적 변수의 일종으로써 조세회피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납세자의 시간가치의 척도를 나타낸다.

한편 어떤 항목을 소득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AGI(adjusted gross income)를 소득수준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도 AGI와 비슷한 개념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 소득수준의 척도로 사용되었다.

## 제 2 절 가설의 설정

앞장에서 논의한 조세회피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조세윤리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Song과 Yarbrough(1978), 조정환(1996)은 조세회피가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도덕수준이 높은 납세자까지도 조세회피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조세윤리수준 내지는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성향이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납세자는 조세회피성향이 낮을 것이다.

### 2. 심리적 부담감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전태영(1990), 류시영(1992),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비율과 조세회피성향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과세권자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적발하면 납세자는 회피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가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

는 정책변수로 사용되는 이유는 세무조사의 비율과 조세회피율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납세제도가 최근 도입된 우리나라의 조세 환경하에서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등의 제재에 대해 많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리적 부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조세회피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가설 2 : 조세회피로 인한 세무조사 등의 제재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가지는 납세자는 조세회피성향이 낮을 것이다.

### 3. 경영수지와 조세회피성향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세금납부수준이 당해연도 기업의 소득수준 못지 않게 과거의 납세실적이나 소득표준율(단순·기준경비율) 등 경영수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세청이 장부를 기장 하지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수입금액에 대해 미리 공표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표준율’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실적의 증감, 소득표준율과의 비교 자료 등이 정부의 각종 감사나 세무조사의 근거가 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무조사나 감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기업이익에 의해 납세수준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납세수준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의식은 조세회피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설 3 : 세금납부수준은 경영수지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 4. 과세자료 은폐 가능성과 조세회피성향

업종에 따라서는 과세자료가 100%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비 노출이나 은폐 가능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설 4 : 과세자료의 은폐가 용이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 5. 소득수준과 조세회피성향

이론적 조세회피 분석모형에서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의 세율체계가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실제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효과가 증가하게 되어 고소득계층이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설 5 :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 6. 부가가치세 납세자집단과 면세사업자집단의 조세회피성향

우리나라의 납세환경은 사업규모, 소득 및 세율이 차별적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 세부담의경감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선행세액으로써 부가세의 신고금액이 소득세등 기타 조세를 부담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반·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소직전연도의 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선행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선행과세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간소득을 자기계산하에 신고하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자유형 집단과 면세사업자집단의 조세회피성향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집단분류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납세자유형의 집단과 면세사업자집단의 조세회피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6 : 부가가치세납세자 유형 집단과 면세사업자 집단이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제 3 절 표본의 선정과 설문조사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실증적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실험적 연구를 사용하였고, 김진황의 연구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하였으나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중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실제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영업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적·조작적으로 부가세납세자집단과 면세사업자집단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사연구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1. 표본의 선정

표본 대상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8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회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작성을 당부하는 한편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표본집단을 자영업자를 선정한 이유는 이들 자영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타 납세자 집단에 비하여 조세회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 2. 설문지 설계 및 자료처리방법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선행연구의 설문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에 적합하게 수정을 가한 후 설문지 개발의 일반적 기준에 유의하면서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위해서 2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11개 항목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기록된 질문에 대하여 해당항목에 표시하도록 하는 한정식 설문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3-1>에 나타나 있다.

<표3-1> 설문지의 구성

분 류	문 항 번 호	문 항 수
인구통계학적 문항	1-7	7
조세윤리	8-10	3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	11-17	7
조세회피성향	18-27	10
심리적 부담감	28-32	5
경영수지와 조세회피	33-35	3
과세자료 은폐와 조세회피	36-40	5
소득수준과 조세회피	41-43	3
행동적 조세회피	44-48	5
세금관련 문제점 순위	49	1
세무의식 조사	50-53	4
계		53



## 제 4 장 연구결과 및 해석

### 제 1 절 자료의 분석

#### 1. 집단별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계속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지 배포와 회수현황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지 배포와 회수 현황

설문의 구성	배포	회수	회수율
일반과세자	100	82	82%
간이과세자	40	37	92.5%
면세사업자	40	37	92.5%
겸업자	10	8	80%
합계	200	164	82%

설문지 회수현황은 일반과세자 82부, 간이과세자 37부, 면세사업자 37부, 겸업자 8부이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 방문 및 인맥을 통해 회수한 관계로 회수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한 빈도는 아래 <표 4-2>와 같다. 그러나 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낮아 납세자 유형별 집단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분석에는 제외하였다.

<표 4-2> 설문지의 사업자유형 분포

사업자유형	빈도	비율(%)
일반과세자	82	50
간이과세자	37	22.6
면세사업자	37	22.6
겸업자	8	4.9
합계	164	100

응답자의 신고소득수준은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가 6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가 17.7%, 그리고 1,000만원 이하가 12.8%로 이들이 전체의 90.9%를 차지하였으며 신고소득수준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 4-3> 응답자의 신고소득수준

신고소득	빈도	비율(%)
결혼	4	2.4
1,000만원 이하	21	12.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9	60.4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9	17.7
8,000만원 초과	11	6.7
합계	164	100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는 <표 4-4>과 같고 서비스업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도·소매업, 나머지 업종은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업종 종사 기간의 분포는<표4-5>과 같으며, 5년 이상 10년 이하가 29.9%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년 이상 15년 이하 26.2% 그리고 5년 이하가 24.4%로 이들이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4>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

사업종류	빈도	비율
제조·건설업자	18	11.0
도·소매업자	57	34.8
서비스업자	67	40.9
농·축·수산업자	6	3.7
기타	16	9.8
합계	164	100

<표 4-5> 응답자의 업종종사기간 분포

종사기간	빈도	비율
5년 이하	40	24.4
5년 이상 10년 이하	49	29.9
10년 이상 15년 이하	43	26.2
15년 이상	32	19.5
합계	164	100

## 2.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선행연구 등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설문항목과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항목이 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설문항목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항목의 신뢰도(reliability)가 대단히 중요하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 하였는

냐로 측정점수가 측정의 사용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타당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인 타당도를 다룬다. 왜냐하면 구인타당도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를 부여한 후, 측정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sup>41)</sup> 본 연구에서는 구인타당도 문제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설문항목들이 어떤 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규명한 다음 타당한 설문을 선택하고, 이 설문항목들에 대해 신뢰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변수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한다.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측정하였느냐의 문제로 측정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없이 측정하였느냐 하는 문제이다.<sup>42)</sup>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  $\alpha$ )를 가지고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 1) 조세회피성향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치는 조세회피성향이다. 조세회피성향은 직접적인 측정방법에 의해 측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조세회피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직접적인 설문에 솔직한 응답을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인지적, 간접적 조세회피 측정 모형을 사용한 것을 참고하여<sup>43)</sup>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10개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5문항이며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936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정에서는 어느 설문항목을 제거하더라도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5 문항을 조세회피성향의 측정치로 사용

41) 성태제, 타당도와 신뢰도, 양서원, 1995, pp.35-36.

42) 상계서, p.54.

43) 이양현·최임수,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0호, 한국세무학회, 1997. 8, pp.17-19

한다. 일반적 사회과학 데이터의 경우 보통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sup>44)</sup>, 이 경우 여러 설문항목을 하나의 변수로 보아 합산을 하던지 평균을 낸 값으로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된다. 본 연구의 차이검정에서는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표 4-6> 조세회피 설문 항목의 선택

조세회피문항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TA1	164	1.8589	0.7847	0.6936
TA2	164	2.2454	0.8019	
TA3	164	2.0982	0.9310	
TA9	164	2.0123	1.2765	
TA10	164	2.3129	0.9198	
합계	820	10.5286	4.7139	



## 2) 조세윤리

Song & Yarbrough는 조세윤리에 대해서 7개의 문항을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3번째와 7번째 문항이 다른 요인과 현저히 다른 행태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sup>45)</sup>,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는 <표 4-8>에 괄호속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윤리에 대한 Song & Yarbrough의 설문문항들을 의역한 다음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설문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44) 강병서·김계수 공저, 사회과학 통계분석, p.299

45) Y. Song, T. E. Yarbrough, 1978, op. cit, p.444

<표 4-7> 조세윤리에 대한 반응

설문내용	전적으로 동의	대체로 동의	일부 동의	동의할 수 없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조세회피는 중대범죄가 아님	4.9% (2.9)	14% (4.7)	32.3% (4.2)	34.1% (44.2)	14.6% (43.5)
자료누락 자발적 공시 불필요	15.2% (4.4)	39.6% (32.4)	26.2% (15.6)	16.5% (36.0)	2.4% (11.6)
탈세자는 신고해야 한다	11.6% (4.0)	25.0 (26.3)	38.4% (17.3)	22.6% (43.5)	2.4% (9.0)
비용가공계상에 대해서는 실정보다는 벌금형 정도가 적당	5.5% (8.2)	39% (40.9)	37.2% (10.8)	15.2% (33.0)	3.0% (7.2)
세금과 관련해서는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한다	26.8% (1.8)	40.2% (10.4)	20.1% (5.7)	11.6% (54.8)	1.2% (27.2)
세법 준수 기대불가	32.9% (8.1)	30.5% (16.1)	25.6% (4.8)	9.1% (55.7)	1.8% (15.4)
법의 허점이용한 절세는 가능	39.6% (6.5)	31.7% (26.2)	21.3% (5.4)	6.1% (40.9)	1.2% (21.1)

\* ( )안은 Song & Yarbrough(1978)의 결과임(일부 동의는 Neutral임)

미국에서는 탈세가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질문에 대해 87.7%가 부정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세를 중대범죄로 인식하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48.7%만이 부정하고 있어 탈세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관대한 또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세청과 관련하여 주요한 것은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것(Main Thing is Not Getting Caught)’이라는 질문에 대해 82%가 부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87%가 넘게 동의하고 있어 조세윤리의식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한편 탈세

자 신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미국 52.5%, 우리나라 25%). 미국이 훨씬 높은 이유는 탈세고발의 범주에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조세윤리를 측정하기 위한 7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면 5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된다. 5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4943이 되었다. 신뢰도 검정에서 어느 설문항목을 제거시키더라도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았다.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일반적인 사회과학 기준인 0.6보다 작으나 크론바하 알파계수의 약점인 신뢰도 과소추정<sup>46)</sup>과 설문항목이 적은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다소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sup>47)</sup>

<표 4-8> 조세윤리 설문 항목의 선택

조세윤리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TA1	164	3.3963	1.0545	0.4943
TA2	164	8.5122	1.0182	
TA4	164	2.7134	0.8983	
TA5	164	2.2012	1.0042	
TA6	164	2.1646	1.0466	
합계	820	12.9877	4.9584	

### 3) 심리적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을 측정하는 설문은 5문항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문항이 동일요인으로 분류되어 이를 타당한 측정치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산포도 검정결과 4번 문항을 제거하면 4.5% 정도 향상될 수 있

46) 성태제, 전계서, pp80-81

47) 이것은 신뢰도 추정에서 조세회피성향과 심리적 부담감, 과세자료노출을 제외한 조세윤리, 경영수지, 소득수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으나 그래도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에 미달하기 때문에 4번 문항을 제거하여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4문항 모두 심리적 부담감의 측정치로 선택하였다.

<표 4-9> 심리적 부담감 설문항목의 선택

심리적 부담감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SB1	164	1.9695	0.9296	0.5174
SB2	164	2.0305	0.8822	
SB3	164	2.5122	0.8826	
SB4	164	2.9573	0.9991	
합계	656	9.4695	3.6935	

#### 4) 경영수지

경영수지와 세급납부수준에 관한 3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문항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신뢰도 검정에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183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어느 문항을 제거하더라도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아 3문항 모두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표 4-10> 경영수지 설문항목의 선택

경영수지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PRO1	164	2.0366	0.9960	-0.1832
PRO2	164	2.2134	0.6807	
PRO3	164	3.6280	1.0918	
합계	492	7.878	2.7685	

### 5)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에 관한 5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문항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Cronbach 알파계수는 0.51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어느 문항을 제거하더라도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아서 4문항 모두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측정치로 선택하였다.

<표 4-11> 과세자료노출 설문항목의 선택

과세자료노출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OPEN1	164	3.6890	0.8331	0.5180
OPEN2	164	3.0549	1.1310	
OPEN3	164	3.5976	0.9381	
OPEN5	164	2.9756	08286	
합계	656	14.5676	3.7308	

### 6)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납부의 비례성에 관한 3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문항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369로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어느 문항을 제거하더라도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아 3문항 모두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표 4-12> 소득수준 설문항목의 선택

소득수준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INCLEV1	164	2.2012	0.7689	0.369
INCLEV2	164	2.0915	0.6901	
INCLEV3	164	3.5366	0.9932	
합계	492	7.8293	2.4522	

<표 4-13> 신뢰도 검정의 요약

	설문	제거	분석	Cronbach $\alpha$
조세회피성향	10문항	5문항	5문항	0.6936
조세윤리	7	2	5	0.4943
심리적 부담감	5	1	4	0.5174
경영수지	3	0	3	-0.1832
과세자료노출	5	1	4	0.5180
소득수준	3	0	3	0.0369

### 3. 상관관계분석

먼저 조세윤리,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 등의 변수가 조세회피성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심리적 부담은  $-0.068$ , 경영수지는  $-0.025$ 로 나타남으로써 조세회피성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윤리는  $-0.220$ ,

자료은폐용이성은 0.240, 소득수준은 -0.211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세윤리의식과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그리고 소득수준은 관련성이 있다. 이로써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납세자는 조세회피성향이 조금 낮으며, 과세자료가 은폐되지 않은 경우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단계에 속하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조금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상관관계분석

	조세성향	조세윤리	심리부담	경영수지	자료노출	소득수준
조세성향	1.000					
조세윤리	-.220**					
유의확률(양쪽)	.005					
심리부담	-.068	.278**				
유의확률(양쪽)	.385	.000				
경영수지	-.025	-.219**	.198*			
유의확률(양쪽)	.749	.005	.011			
자료노출	.240**	-.122	-.070	.143		
유의확률(양쪽)	.002	.118	.374	.068		
소득수준	-.211**	.187*	.082	-.069	-.256**	
유의확률(양쪽)	.007	.017	.299	.382	.001	

#### 4.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 1)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세윤리의식,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의식을 독립변수로 두고 조세

회피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결과는 <표 4-15>에서 <표 4-17>에 제시되어 있다.

$$TA = \alpha + \beta_1 TE + \beta_2 SB + \beta_3 PRO + \beta_4 OPEN + \beta_5 INC$$

TA : 조세회피성향

TE : 조세윤리

SB : 심리적 부담감

PRO : 경영수지

OPEN : 과세자료의 은폐

INC : 소득수준

<표 4-15> 모형 요약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오차
1	0.342 <sup>a</sup>	0.117	0.089	0.6749

<표 4-16>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9.478	5	1.896	4.161	.001 <sup>a</sup>
잔차	71.522	157	.456		
합계	81.000	162			

a 예측값: (상수), 소득수준, 경영수지, 심리부담, 자료은폐, 조세윤리

b 종속변수: 조세성향

<표 4-17> 계수

$$TA = \alpha + \beta_1TE + \beta_2SB + \beta_3PRO + \beta_4OPEN + \beta_5INC$$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에 대한 95% 신뢰구간	
	B	표준오차	베타			하한값	상한값
1 (상수)	-4.2E-05	.053		-.001	.999	-.105	.104
조세윤리(TE)	-.185	.081	-.180	-2.273	.024	-.346	-.024
심리적부담감(SB)	-7.0E-03	.058	-.009	-.121	.904	-.121	.107
경영수지(PRO)	-7.3E-02	.055	-.103	-1.325	.187	-.183	.036
과세자료은폐(OPEN)	.137	.056	.192	2.431	.016	.026	.249
소득수준(INC)	-.132	.078	-.133	-1.686	.094	-.287	.023

a 종속변수: 조세회피성향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귀모형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형의 유의도를 보면 F값이 0.001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윤리의식,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의식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설명력(R제곱)은 11.7%로 나타났다.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윤리의식과 과세자료의 노출은 95% 신뢰수준에서, 소득수준은 90% 신뢰수준에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윤리의식이 낮을수록, 과세자료의 은폐가 용이할수록,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단계선택법에 의한 변수선택

단계별 투입법은 통계적 유의도가 낮은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중회귀식을 얻는 방식이다. 이는 독립변수 중에서 설명력이 높고 회귀계수의 통계

적 유의도가 가장 높은 변수부터 투입하다가 회귀계수의 유의수준이 0.05 이하가 되면 탈락 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설에 따른 5가지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계선택법(Stepwise Selection Method)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선택법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4-18>와 <표 4-19>, <표 4-20>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8> 진입/제거된 변수<sup>a</sup>

모형	진입된 변수	제거된 변수	방법
1	자료은폐	.	단계선택 (기준: 입력할 F의 확률 $\leq .050$ , 제거할 F의 확률 $\geq .100$ ).
2	조세윤리	.	단계선택 (기준: 입력할 F의 확률 $\leq .050$ , 제거할 F의 확률 $\geq .100$ ).

a 종속변수: 조세성향

<표 4-19>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F 변화량
1	.240 <sup>a</sup>	.058	.052	.6886	.058	9.827	1	161	.002
2	.302 <sup>b</sup>	.091	.080	.6783	.034	5.910	1	160	.016

a 예측값: (상수), 자료은폐

b 예측값: (상수), 자료은폐, 조세윤리

<표 4-20> 계수<sup>a</sup>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에 대한 95% 신뢰구간	
	B	표준오차	베타			하한값	상한값
1 (상수) 자료은폐	1.995E-03	.054		.037	.971	-.105	.109
	.171	.055	.240	3.135	.002	.063	.279
2 (상수) 자료은폐 조세윤리	-7.231E-04	.053		-.014	.989	-.106	.104
	.149	.054	.209	2.741	.007	.042	.257
	-.190	.078	-.186	-2.431	.016	-.345	-.036

a 종속변수: 조세성향

분석결과를 보면 6가지 조세회피요인 중에서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과 조세윤리의식으로 분석되었고,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측면에서 보면 과세자료노출이 조세윤리의식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가설의 검증

### 1. 가설 1의 검증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납세자는 조세회피성향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피어슨(Pearson)상관계수가 -0.220으로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24로써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윤리의식에 따라 조세회피성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1은 채택된다.

이러한 결론은 선행연구인 김진황(1993), 이우윤(1996), 박원일(2000)

등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 2. 가설2의 검증

세무조사나 제재등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가진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조세회피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면 피어슨상관계수  $-0.068$ 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결과  $0.904$ 로써 90% 수준에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2는 기각된다. 이러한 결론은 박원일(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회귀분석 등이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낼 뿐이므로 심리적 부담과 조세회피성향중 어느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지는 본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조세윤리와 심리적 부담감에 상관계수  $0.278(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세윤리 의식이 높은 납세자는 조세회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많이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 가설 3의 검증

우리나라에서 세금납부수준이 당해연도의 기업의 소득수준보다는 과거의 납세실적이나 소득표준율(단순·기준경비율)등 경영수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에 대한 검정으로서 세금납부수준은 기업이익의 감소 등에 의한 경영수지 보다는 경영수지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 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면 상관계수가  $-0.025(P=0.78)$ 로써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결과를 봐도 유의확률이 0.183으로써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된다. 이러한 결론은 박원일(2000)의 연구 결과와는 배치된다. 따라서 세금납부 수준의 결정이 다른 요인보다는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것에 긍정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금납부 수준이 경영수지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식을 가진 납세자는 오히려 조세회피성향이 낮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 4. 가설 4의 검증

과세자료의 은폐 또는 비노출이 용이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0.24(P=0.002)$ 으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회귀분석결과도 유의확률이 0.016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4는 채택된다. 이러한 결론은 박원일(2000)의 연구결과와 배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통구조의 전근대성과 무자료거래등 소규모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투매와 같은 변칙거래로 세금계산서수수의 기피현상과 영세한 도·소매 업체에서 박리다매 형태로 인한 세금계산서 탈루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가설 5의 검증

높은 세율 단계에 속하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세회피성향의 상관관계가  $-0.211(P=0.007)$ 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과 확률이 0.094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회피를 많이 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세금납부수준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소득을 가정할 경우 조세회피의향이 있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된다. 이러한 결론은 전태영(1992), 유시영(1993), 박원일(2000)의 연구와는 일치된다.

## 6. 가설 6의 검증

부가가치세 납세자유형 집단과 면세사업자집단이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납세자유형의 단일요인과 조세회피성향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21>와 같다.

표<4-21> 일원배치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조합됨)		.473	2	.236	.452	.637
일반과세자	선형향	가중되지 않음	.319	1	.319	.611	.436
간이과세자		가중됨	.228	1	.228	.437	.510
면세사업자		편차	.244	1	.244	.467	.495
집단-내			79.943	153	.523		
합계			80.416	155			

종속변수 : 조세회피성향

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이 0.611로서 간이과세자 0.437과 면세사업자 0.4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간의 차이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을 재확인하기 위해 Scheffe 통계량으로 계산된 아래의 사후검증 <표4-22>을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집단간의 조세회피성향은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자 유형집단과 면세사업자 집단은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4-22> Scheffe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사후검정

(I) 사업자유형	(J) 사업자유형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일반과세자 1.00	2.00	-3.8877E-02	.1432	.964	-.3927	.3150
	3.00	.1119	.1432	.737	-.2419	.4658
간이과세자 2.00	1.00	3.888E-02	.1432	.964	-.3150	.3927
	3.00	.1508	.1681	.669	-.2646	.5662
면세사업자 3.00	1.00	-.1119	.1432	.737	-.4658	.2419
	2.00	-.1508	.1681	.669	-.5662	.2646

종속변수 : 조세회피성향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요약해 보면 본 연구의 표본대상 중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75% 이상 <표4-4>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유통구조가 문란하여 세금계산서 징취율이 낮았으나, 현실적으로 카드자료의 확산으로 인해 매출자료가 거의 양성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2005년부터 확대 시행예정인 현금영수증 카드제 실시에 대한 우려의 심리적 반응이 복합작용하여 집단간의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세 회피성향에 대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이었다.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정된 조세회피 요인은 조세윤리,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 이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조세회피요인으로서 조세윤리의식, 과세자료의 은폐가능성 및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감과 경영수지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자들의 특성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간의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는 납세자들이 조세에 대한 인식과 납세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염두에 두고 과세 공평성과 새로운 세원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조세가 왜 존재하는지 국민으로서 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가 왜 문제이고 이에 대한 처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조세윤리교육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셋째, 과세자료의 은폐 내지 비노출의 용이성과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추어볼 때 과세자료의 투명성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장제도(회계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래 자료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납세액의 적은 저소득자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세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허위신고나 은폐에 대한 동기가 적은편이나 고소득자일 수록 조세회피에 대한 동기가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져야한다. 실제로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조세공평성에 대한 의문,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감상실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의 양성화방안과 더불어 조세윤리에 대한 홍보 및 조세회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우편이 아닌 직접방문 또는 인맥을 통해 실시한 결과 회수율은 높았으나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뢰성이 비교적 낮았다.

둘째, 과세당국에서 조세회피 실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자료에 대한 연구가 곤란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개인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측정대상자의 응답에 편의가 있어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다 보니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지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상이한 반응이 나올수 있는데 이러한 편의를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과 비슷한 개인기업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일반화 시키는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실감 있는 연구를 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요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세회피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설문항목 개발이 필요하며 학제간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조세회피성향이나,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강병서·김계수, 사회과학 통계분석, SPSS 아카데미((주)데이터 솔루션)

국세청, 「세무조사 실무」, (국세청 199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1999)

김유승,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김진황,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3).

박원일,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0).

유시영,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2).

윤말순,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2001).

이우윤,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

이우택·이철재, 조세법과 세무회계, 조세통람사(1998).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2).

이종환, 부가가치세 납세자 유형에 따른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회계연구, 2000년 제1호).

임승현, 조세법, 박영사(2003)

-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0).
- 조정환,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8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1996).
- 최 광,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1987).
- 최임수,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
- 최평윤,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

### <국외 문헌>

- Allingham, M.G.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 1972.
- Alm, J., B. R. Jackson & M. Mckee,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National Tax Journal 45(1992), pp. 107-114
- Alm, J. & W. Beck, Tax Amnesties and Compliance in the Long Run : A Time Series Analysis, *National Tax Journal* 46(1993), pp. 53-60
- Christiansen, V.,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1980.
- Cross, R. and G. K. Shaw, The Tax Evasion-Avoidance Choixe: A Suggested Approsch, *National Tax Journal*, Vol. 34(1981), pp. 489-491.

- Eistrand, L.,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Focus Group and Survey Results, 1980 Proceedings of the 73rd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National Tax Association, November(1980).
- Friedland, N., S. Maital, and A. Rutenberg,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August 1978).
- Kaplan, S. E. & P. M. Reckders, A study of Tax Evasion Judgement, National Tax Journal 38(1985), pp. 97-102
-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No.2. 1979, pp.245-255.
- Song, Y.D. and T.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 1978), pp.442-452
- Mork, K.A., "Income Tax Evasion: Some Empirical Evidencee," Public Finance, Vol. 30. No.1, 1975.
- Spicer, M.W. and L.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June 1980).
- Spicer, M.W. and S. Lun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April/June Vol. 2., 1976).
- Srinivasan, T. N., "Tax Evasion: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November 1973).
-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 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74).
- Witte, A. D. and D. F. Woodbury, op. cit., pp. 1-13

Yitzhaki, S.,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3, May 1974.

Young, J. C., Factors Associated with Noncompliance : Evidence from the Michigan Tax Ammesty Progra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6, No. 2(1994), pp. 82-105



## ABSTRACT

# An Empirical Test on Tax Avoidance Behavior of Taxpayers

Yeong-Bae Moon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ang- Bong Lee

This paper examines tax avoidance behavior of self-employment by using questionnaires. The paper selects several factors as being representative of those commonly used in taxpayers' tax avoidance behavior research, and reclassifies them into five factors, such as, tax ethical, tax psychological, business profit level, tax materials concealable, and income level factors.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is used here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behavior and five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tax ethical, tax materials concealable, and income level factors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behavior but not tax psychological and business profit level factors.

The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ricter tax enforcement to taxpayers with high income levels seems to increase tax resistance and may explain widespread tax

avoidance or tax evas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more incentive for high income taxpayers.

Second, it will be also necessary to provide more incentive for faithful taxpayers because the encouragement of self-bookings systems and visibility of transaction could be effective for reducing tax avoidance. In addition, tax penalties may be also effective policy to prevent tax avoidance or evasion.

Finally, taxpayers' willingness and ability to conceal income are key factors with respect to tax avoidance. We need the publicity to explain why we people pay taxes. Tax ethical education is one of the effective tools to induce taxpayers to comply more.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자영업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로서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후학을 도와주시고, 연구에 동참하신다는 뜻에서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자영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무기명식으로 배포 회수되고, 그 결과는 통계처리 되어 오직 학술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8조 및 9조에 의거 철저히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정보유출 등 비밀 유지에는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연구의 결과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은 본 연구의 생명이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산처리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지 항목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귀하의 성실한 의견을 표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4년 8월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이 상 봉 (휴대폰 : 011-698-3143)

연구자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석사과정 문 영 배

사무실 : 753-5305 (휴대폰 : 011-9663-5305)

●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또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솔직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사항들을 읽고 해당란에 ( √ )표에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귀하의 연간 소득금액(수입금액) 수준은?

- ①결손      ②1천만원 이하      ③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④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⑤8천만원 초과

3. 귀하의 성(性)은?

- ① 남자



- ② 여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귀하의 사업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제조업자·건설업자    ②도·소매업자    ③서비스업자  
④농·축·수산업자    ⑤기타

5.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미만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대학원졸 이상

6. 귀하의 사업자 유형은?

- ① 일반과세자      ② 간이과세자      ③ 면세사업자      ④겸업자(과세,면세)

7. 귀하가 현재의 업종(직업)에 종사한 년수는?

- ①5년이하      ②5년이상 ~ 10년이하      ③10년이상 ~ 15년이하  
④15년이상

8. 귀하께서는 수정신고 및 신고자료 지연제출이나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등을 납부하신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께서는 세무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께서는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추정등의 조치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소 귀하가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 √ )해 주세요.

11. 조세회피는 정부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2.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또는 자료확인시 따로 질문을 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자료누락 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3. 주위의 누구든 세금에 대해 탈세 등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납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4. 오늘날의 높은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가공원가 및 부실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할 경우에 벌금정도의 처벌이면 충분하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5. 세금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6. 현행의 세법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 납세자들이 그대로 따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7.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등) 1천만원 정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는 비난 받아야 한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8. 평소 정부에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19. 귀하께서는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실대로 신고·납부해 오고 있으신지요?

- ①매우 정확하게 납부 ②거의 정확하게 납부 ③다소 줄여서 납부  
④많이 줄여서 납부 ⑤상당히 많이 줄여서 납부

※ 다음 물음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십시오.

20. “탈세”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21. 현실적으로 투자금액과 관련 비용을 감안하면 법대로 세금을 다 내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22. 현행 세법구조상 세무신고를 할 때에는 업종별 단순, 기준경비율에 맞추어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①전적으로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일부 동의 ④동의할 수 없음 ⑤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23. 사업자 갑(甲)의 실제소득금액이 연간 1억원인 경우 세금은 3천만원이다. 사업자 갑(甲)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너무 많다 ②많다 ③적절하다 ④적다 ⑤너무 적다

24. 평소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 ①너무 많다 ②많다 ③적절하다 ④적다 ⑤너무 적다

25.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실제로 조세회피를 어느정도 실행하실 것인지요?

- ①아주 많이 하겠다 ②다소 많이 하겠다 ③조금 하겠다 ④하지 않겠다 ⑤전혀 하지 않겠다

26. 실제소득에 비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신고 소득수준은 어느정도인지요?

- ①80%이상 ②60%이상 ③50%이상 ④40%이상 ⑤40%미만

27. 사업형편이 어렵더라도 세금만은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시겠습니까?

- ①100%하겠다 ②어느정도 하겠다 ③일부 하겠다 ④하지 않겠다 ⑤전혀 하지 않겠다

28.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상 부담이나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크다 ②다소 있다 ③보통이다 ④영향이 거의 없다 ⑤영향이 전혀 없다

29. 사업자들이 평소에도 세무조사 등 있을 수 있는 세무당국의 제재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매우 많다 ②다소 있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없다 ⑤전혀 없다

30. 사업자들은 결산 후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사후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매우 많다 ②다소 있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없다 ⑤전혀 없다
31.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당초 내려던 액수보다 적게 신고 하시겠습니까?  
 ①꼭 그렇게 하겠다 ②대체로 하겠다 ③조금 하겠다 ④대체로 안하겠다 ⑤전혀 안하겠다
32. 불성실 신고에 따른 세법상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등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①아주 정당하다 ②정당하다 ③보통이다 ④다소 부당하다 ⑤아주 부당하다
33. 일반적으로 수익이 많거나 적을 경우 기업의 이익정도가 조세납부 수준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①매우 영향이 크다 ②다소 영향이 있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없다 ⑤영향이 전혀 없다
34. 일반적으로 기업이익과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전액 납부한다 ②다소 더 납부한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납부하지 않는다  
 ⑤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35.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될 수록 실제소득금액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려 할까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적게 내려한다 ⑤대부분 적게 내려한다
36. 일반적으로 과세자료의 은폐 또는 비노출 누락이 용이한 업종의 경우 탈세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①매우 많다 ②많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없다 ⑤전혀 없다

37.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자의 과세자료의 노출 또는 양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90% 이상    ②80% 이상    ③60% 이상    ④50% 이상    ⑤50% 미만

38. 과세자료가 잘 나타지지 않는 경우에도 스스로 노출하여 자진신고 할 사업자가 많다고 보십니까?

- ①거의 대부분이다    ②대체로 많다    ③조금 있다    ④대체로 없다    ⑤거의 없다

39. 과세자료가 전액 노출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 ①상당히 가능    ②가능하다    ③약간은 가능    ④불가능하다    ⑤전혀 불가능

40. 선생님의 경우 사업상 과세자료의 비노출(누락)이 가능하다면, 절세를 위해 비노출(누락)가능한 것을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요?

- ①전액 노출    ②대부분 노출    ③일부 노출    ④상당히 노출    ⑤전액 비노출

4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 세부담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를 어느 정도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①아주 많이 한다    ②많이 한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적게 한다    ⑤아주 적게 한다

42. 소득이 많을수록 조세회피를 많이 하고 있다면, 위법한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하여야 할까요?

- ①매우 엄격하게    ②엄격하게    ③보통이다    ④약하게    ⑤그냥 둔다

43. 귀하가 고소득자에 속한다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다면 남들만큼 조세회피를 하실건가요?

- ①최대한 많이 하겠다    ②남들보다 더 하겠다    ③남들만큼 하겠다  
④남들보다 적게 하겠다    ⑤하지 않겠다

※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할 때 납세자의 어느 정도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4. 납세자들이 소득을 누락한다.(외형누락 포함)

- ① 거의 모든 사람    ② 대부분    ③ 상당수    ④ 소수    ⑤ 극소수

45. 세금 신고시 비용(경비)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항목을 부풀려서 소득을 줄인다.

- ① 거의 모든 사람    ② 대부분    ③ 상당수    ④ 소수    ⑤ 극소수

46. 사업자들은 세무 조사 시에도 어느 정도 거짓으로 답변한다.

- ① 거의 모든 사람    ② 대부분    ③ 상당수    ④ 소수    ⑤ 극소수

47. 사업자들은 세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조작(작성, 왜곡 또는 변조)한다.

- ① 거의 모든 사람    ② 대부분    ③ 상당수    ④ 소수    ⑤ 극소수

48.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행정기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아주 효율적임    ② 상당히 효율적임    ③ 효율적이지 못함  
④ 아주 비효율적임    ⑤ 잘 모르겠다

49. 세금과 관련한 문제점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를 매기시오.

순위

- ① 중산층의 부담이 너무 많다    (        )  
② 법의 허점이 너무 많다    (        )  
③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        )  
④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        )  
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    (        )

50. 귀하의 주변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51. 선생님의 경우 다른 동업종의 사업자에 비한다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아주 더 많이 낸다    ② 조금 더 많이 낸다    ③ 비슷하다  
④ 조금 더 적게 낸다    ⑤ 훨씬 더 적게 낸다

52. 사업상 경비지출(매입비용, 임금, 임차료, 조세공과금, 금융비용, 기타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출 금액크기 순위를 정한다면 “세금”은 몇 번째로 생각하시는지요?

- ① 1순위    ② 2순위    ③ 3순위    ④ 4순위    ⑤ 5순위

53.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조세회피(절세 및 탈세포함)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한다    ② 많이 한다    ③ 조금 한다    ④ 거의 하지 않는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끝 -



